

● 제33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863)

2025. 6.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863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5. 5. 26.

다. 회부일 : 2025. 5. 29.

#### 2. 제안이유

가.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난임, 유산·사산 및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련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통해 문제 완화와 삶의 질 향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 '24년 4월 보건복지부 권역 상담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하여 '24년 9월 서울권역 상담센터 개소 후 '25년 12월 31일자로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인력 활용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①항 2호(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난임부부, 유산·사산 경험부부, 임신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 정서적지지 및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의 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바,
- 민간 위탁을 통해 전문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수탁 기관의 책임성 확대로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활성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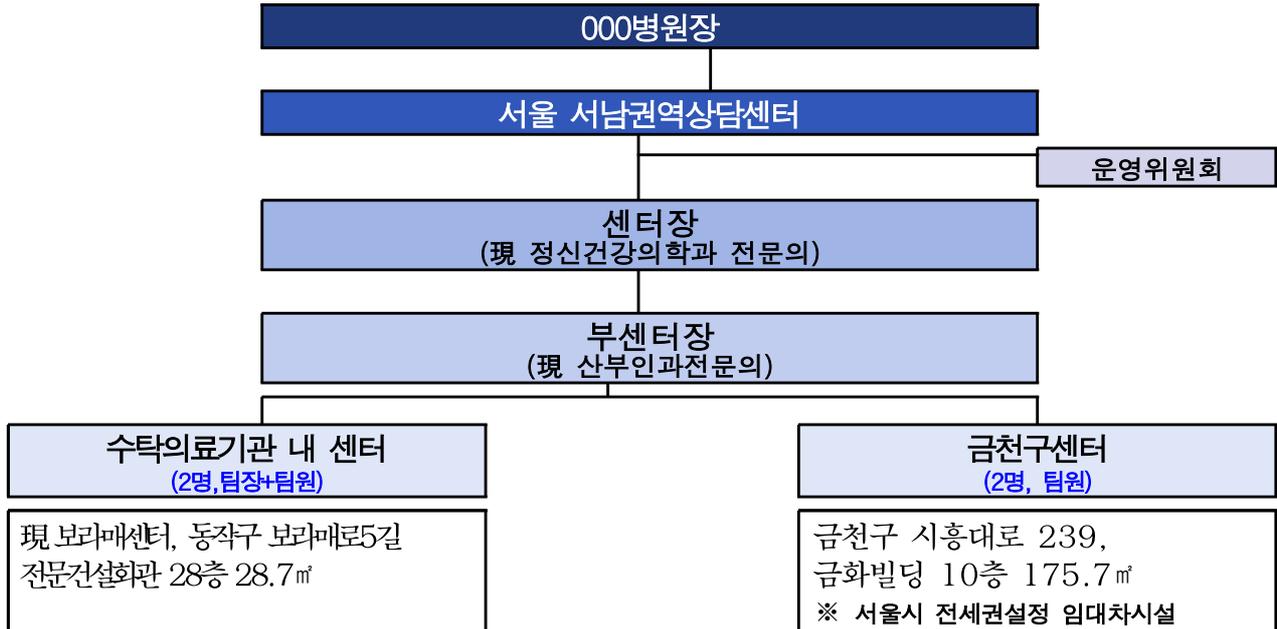
다. 위탁사무 내용

- 센터 설치 및 수탁시설(자산) 종합적인 관리 운영 전반
- 난임·임산부 우울 및 심리평가
-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자조모임 운영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고위험 대상자 발굴 시 기관 내 진료부서 또는 외부 진료 가능 기관 연계
- 권역별 난임 여성·임산부 심리상담 연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전담 인력 채용, 교육, 사례관리 등 상담 인력 역량강화
- 심리상담센터 홍보 등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추진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무

라.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3년)

마. 위탁시설 개요(시설명, 조직, 소재지, 규모, 주요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 조직도 및 정·현원 : 1개 권역 2개센터(센터장/부센터장, 팀장외 팀원3명)



○ 주요시설 : 개인·집단상담실, 민원대기실, 사무실 등

○ 위치도

시설명: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수탁의료기관 내 센터(現보라매센터)	금천구센터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위탁)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상담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의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모·선정

사. 소요예산 : 325백만원

- 민간위탁금 : 325백만원(국비 50% 130, 시비 50% 130, 자체시비 65)
  - ※ 금천구센터 임차료 및 임차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 부서예산 편성(35백만원)
  - ※ '26년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 예산 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인건비246,127천원, 운영비 57,741천원, 사업비 등 21,132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 ② 시장은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5.5.6.: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신규위탁)
- 2025.5.13.: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5. 제3차)

○ 향후계획

- 2025.6.: 시의회 동의
- 2025.8.~12.: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박정민 (☎ 2133-9492 )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 동 '서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라매병원'과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기존 '보조금 사업 협약'의 만료 시기가 '25년 12월 31일로 도래 예정임에 따라, 향후 동 센터를 '보조금 사업'이 아닌 '민간 위탁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시는 기존 '서울권역' 센터의 '사업 수요 포화'를 해소하고자, 난임 및 난임 시술 인구가 가장 많은 '서남권역'에 추가 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음.

- [보조금 사업 협약]: '24. 7. 5. ~ '25. 12. 31. (보라매 병원)
-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동 센터의 사업 '예산 형식'을 관련 「모자보건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및 타 지자체 사례와 다르게 '민간 위탁금'이 아닌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였음.
- 그러나, '예산 형식' 외 실질적인 '센터 운영'은 「모자보건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에 따라, 그리고 '서울시의 기관 모집 공고문'에서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고한 바와 같이, '위탁 체계'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즉, 예산 형식은 '보조금'으로, 실질 운영은 '위탁' 형식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 것이라 판단됨.
-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 예산 형식'에 관해, 지난 '23년 6월 경 '서울시 법률지원 담당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 센터의 사무는 관련 '모자보건법령'상, '민간 위탁 사무'로 봄이 상당하다"고 자문한 바 있으며, "향후 동 사무를 계속 추진할 시, '민간 위탁 사무'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권고('23.5.19.)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제2항,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는 서울시 사무로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 봄이 상당함. 본 협약기간 종료 후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시기를 권고

- 그리고 이에 서울시는 이번 제331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동 사무를 ‘민간 위탁 사무’로 전환하는 ‘신규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p><b>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b>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lt;개정 2009.7.30., 2012.12.31., 2014.5.14., 2025.1.3.&gt;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b>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b>,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p>
<p><b>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b> ① 시장은 <b>제4조 각 호 사무</b>에 대해 <b>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b>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b>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b> &lt;개정 2021.3.25., 2021.12.30.&gt;</p>

## 2 신규 민간위탁 개요

- 기존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보조금 사업) 현황
  - '24.2월 : 보건복지부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운영 기관 공모 선정
  - '24.2월 : 서울 서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운영 기관 공모
  - '24.4월 : 보건복지부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
  - '24.7월 : 보라매병원과 업무협약 체결('24.7.5.~'25.12.31.)
  - '24.8월 : 서울 서남권역 금천구 상담센터 추가설치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시흥대로 239) ('24.9.1.~'25.12.31.)
  - '24.9월 :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24.9.27.)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지방보조사업	1년 6개월 ('24.7.5.~'25.12.31.)	보라매병원	공모·선정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선정

구분	 <b>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b>	
위치	보라매 상담센터 (신대방동 보라매로 5길, 전문건설회회관 28층)	금천구 상담센터 (시행대로 239, 금화빌딩)
시설규모 및 임대현황	· 면적 : 28.7㎡ · 상담실, 사무실 · 병원 자체 임대시설 사용	· 면적 : 175.7㎡ · 상담실3, 집단상담실, 대기공간, 서고(창고) · 서울시 전세권 설정 임차시설
운영인력	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센터장 (산부인과 전문의)	
	· 사회복지사(팀장) · 임상심리사 1명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 · 간호사 1명

○ 신규 민간 위탁 개요

- 사무명 :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보라매센터, 금천구센터)
  - 위탁유형 : 시설형 (신규) ※ 서울시 전세권설정 임대차 시설
  - 위탁기간 (예정) : 민간위탁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26.1.1.~'28.12.31.)
  - 소요예산 ('26년 예정) : 325,000천원(민간위탁금)
- ※ 자체 시비: 인건비 약 55,397천원, 그 외 사업비 약9,602천원

구분	계	국비(50%)*	시비(50%)	자체시비
서울서남권역 상담센터	325,000	130,000	130,000	65,000
<b>총계</b>	<b>325,000</b>	<b>130,000</b>	<b>130,000</b>	<b>65,000</b>

- 종사인력: 센터장(1), 부센터장(1), 팀장(1), 팀원(3)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現 수탁 법인	위탁예정 기간	심의 결과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서울 <b>서남권역</b>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 터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신규	-	3년 이내 (26.1.1.~28.12.31.)	<b>적정</b>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

- ‘서울특별시장이 민간에 신규 위탁 (공모)하고자 하는 “서울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체적인 위탁사무

- 센터 설치 및 수탁시설(자산) 종합적인 관리 운영 전반
- 난임·임산부 우울 및 심리평가
-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자조모임 운영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 고위험 대상자 발굴 시 기관 내 진료부서 또는 외부 진료 가능 기관 연계
- 권역별 난임 여성·임산부 심리상담 연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전담 인력 채용, 교육, 사례관리 등 상담 인력 역량강화
- 심리상담센터 홍보 등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추진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무

- 우선, 동 ‘서울권역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성격은 「모자보건법」제11조의4 및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검사, 난임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등을 위한 상담·심리평가·교육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라 판단됨.

- 특히, “동 센터”의 주된 사무가 ‘난임부부,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우울 및 심리 평가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서비스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이에 더해, “동 권역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는 「모자보건법」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의 사무이며, 서울특별시장은 동 법 제11조의4제3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문적인 법인’에게 ‘동 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모자보건법」 제 11조의4(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 12조의4(상담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동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성격은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검사, 난임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 등을 위한 상담·심리평가·교육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임. 따라서, '난임, 산후 우울증 등과 관련한 의료 전문성 및 상담 전문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법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무라 판단됨.
- 아울러, 「동 권역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는 「모자보건법」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 다만, 지난 동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동 센터의 사업 '예산 형식'을 관련 「모자보건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및 타 지자체 사례와 다르게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협약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 그러나, '예산' 외의 다른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였음. 따라서, 향후 동 센터를 신규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 「모자보건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신현태	02-2180-8145